####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이 해 충 돌 방 지 제 도 운 영 지 침

## 목 ㅊ

제1장 총칙1
제1조 목적1
제2조 정의1
제3조 적용범위2
제4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2
제2장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행위2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2
제6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3
제7조 이사장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4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4
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5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6
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6
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6
제14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7
제3장 신고·신청의 처리 ·······7
제15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7
제16조 위반행위 신고7
제17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7
제18조 이첩·송부의 처리8
제19조 종결처리8
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8

0	하	충돌	방지	제	도	운영	ス	13
---	---	----	----	---	---	----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022. 5. 4. 제정(지침 제431호) 2022. 6. 29. 개정(지침 제440호) 2024. 10. 16. 개정(지침 제519호)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는 임직원이 법령·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단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하다.
- 3.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 는 단체
- 라.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1

- 마.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팀장·처장·실장·본부장(이에 상당하는 부서장을 포함)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
- 아. 그 밖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공단 제규정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이거나,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또는 공단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및 공단 제규정에서 정한 임직원에게 적용하다.
- 제4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이사장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4. 이사장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6. 이 지침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7. 이 지침에 따른 이사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 보

#### 제2장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행위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경우 안 날로

- 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 1. 인가·허가·면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작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4.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6. 공사 ·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 구매의 계약 · 검사 ·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단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8.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9.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0.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1.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로 정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 가.「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 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기피를 신청할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②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 직원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이사장이 임직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 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이사장인 경우, 기획본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0,16.>
- ⑦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은 신고·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4.10.16.>
- ⑧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0,16.>
- 제7조(이사장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이사장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분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 ② 이사장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 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 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이사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2024.10.16.>
-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하다.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임직원은 다른 법령·공단 제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공단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공단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임직원이 공단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의 소속 장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자가 이사장일 경우, 기획본부장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① 공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 1. 이사장
-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3. 공단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 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0.16.>

-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공단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할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개정 2024.10.16.>
- 1. 이사장
- 2.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3. 공단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한하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4.10.16.>
- 제12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관련 법령 및 공단 제규정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공단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공단 제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16.>
- 1.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 위
- 2.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
- 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 3. 공단 업무용 차량 등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 제13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임직원(공단 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또는 공단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단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단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0.16.>
- 제14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공단 퇴직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신고 · 신청의 처리

- 제15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사장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하다
- 제15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 제2항, 제8조제1항 · 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6.]

- 제15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이사장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제12조의 공단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본조시설 2024.10.16.]

- 제16조(위반행위 신고) ① 임직원이 이 지침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단, 그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통보해야 한다.
- 제19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접수 받은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 우
-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21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우영한 수 있다.
- 1.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 2.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3.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 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위원회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자문위원회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 제하을 준수해야 한다.
- 제24조(장계) 이 지침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고,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6.29.>

제25조(과태료) 이사장은 이 지침에 위반된 행위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6.]

부 칙 <지침 제431호, 2022.05.04.>

이 지침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440호, 2022.06.29.>

이 지침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519호, 2024.10.16.>

이 지침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뒷 쪽)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아 쪼)

• 어드의 나/ === \의 시고.시처이이 자서하지 아이며 [ ]에는 해다하는 고에 / 표시를 하니다.

접수번호	<u> </u>	수일	처리일	(11 -1)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신청인	① 담당 업무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단체 [ ] 공직지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기	il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③ 관련 직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	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니 사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얼 당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차 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님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ዘ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이나 법인 또는 단체 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히 합니다.	H충돌 방지법」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건	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	하고 회피를 신청
			년	월 일
		신고·신청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원	용지 60g/m²(재활용품)]

- ① "당당 언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당당하고 있는 언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기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기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총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료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성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발라가나 발려주는 행위(「금융실명가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동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발되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병(「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 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 3회)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  $\cdot$  법인  $\cdot$  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의 배정 · 지급 · 처분 ·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시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시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뒷 쪽)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중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접수번호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	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접수일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성명	<b> </b>	-	] 개인 [ ] 법인 ] 단체 [ ] 공직자
신청인	주소		연락처	
	성명	소속	직위(직	급)
업무 담당 공직자	① 관련 직무			
공식사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기	가 있는 자 [ ] 기타	
	무가 있음 가 있다고 판단됨			
기피 신청사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 니다.	해충돌 방지법」제53	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	<u>.</u> 관련 기피를 신청합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재활용품)]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 공립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혜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시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장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총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저스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청인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생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6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	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b>-</b>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업	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약	일	
	2	직무관련자의	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라의 거래 신고) 라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		관련 부동신	보유·매수	신고,
조치대상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기타(					공동수행지 )	의 지정	
조치결과		를 방지법」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I위(직급)(	직무-			
기타 참고사항							
	해충돌 방지법」제7 와 같이 통보합니디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	적이히	해관계자의 -	신고 등에	대한
					년	월	일
	힌	·국교통인	안전공단 이사장			(서명 5	돈는 인)

#### (뒷 쪽)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지므를 구체적으로 저스니다

작성방법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함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4.10.16.>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 점검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 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② 확인·점검 내용						
	[ ] 특이사항 없음					
③ 확인·점검 결과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9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① 담당 업무		직위(직급)	
	성명	소속	연락처	
직무관련자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지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제·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 법인 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총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점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성명				소속				
제출인	제출인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	인·단체 등								
근무기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	 용
대리, 고문·자			717101	/ A TUT!)				. Maile	
	동기간		기관병	(소재지)			——————————————————————————————————————	오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	던 사업 등								
근무기	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	용
<b>기타</b> 근무기:	 간	2	·무처(소재지)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	 용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	<u>-</u> 디법」제8	조에 따라 민간부	문 업무	활동 내역	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	기담당관 :	귀중		제출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재활용품)]

			the second of the second		
I 이해충돌 방지제	두 운영지친	「벽지	제6호의2서식]	<시석	2024 10 16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	동 내역 없음 확인서
괴초이	성명	소속
제출인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열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거래자	연락처		] 본인의 직계존: 날이하는 배우자의 난계사업자		-		
	성명	소속	연락처		개인 [ ] 법인 단체 [ ] 공직자		
거래상대방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여 이익 또는 불이   약을 체결하거나 #   여 이익 또는 불	익을 직접적으로 받 네결하려는 것이 명박 이익을 직접적으로	는 개인이나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		
	[ ] 금전 차용 [ ] 금	·전 대부 [	] 유기증권 거리				
	계약체결일	-III L	상환기일	"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거래내용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	음역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혀	배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를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지"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재활용품)]

(뒷 쪽)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	- 위(직급)		
채용기관	채용사유					
	성명	주소				
채용대상지 (확인인)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	정일		
	가곡	두 채용 제한 확인사항				
· 기조레 오	채용대상자의 <b>가족 중 채용?</b>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	업무를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b>가족 중 채용</b> ? <b>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b> 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	[]예[]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딘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승내경사(작인인)		(지명 또는 인)		
		유의사한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수이계얀 체견 제하 어부 화이서

		내일 세한 어구 되면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찌	1
비즈기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	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	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b>소속 고위공직자, 배</b>		비속	[]예[]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 <u>2</u> )	계약 업무을 법령상시실상 담당하는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b>감독기관 소</b>	<sup>독자의</sup>	[ ] 예 [ ] 아니오	
3	<b>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b> 하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b>모회사 소속</b>		4	 [ ] 예 [ ] 아니오
4	<b>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b> 하 해당하는가?	I는 배우자의 식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_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비	IP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	속	[]예[]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익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del>존</del> 속	*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b>  존속·비속</b> 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①부터 ⑧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한	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b>또는 단체</b> 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			
	<b>사업자</b>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8)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b>단독</b>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		.,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성	<b>!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b> E	<b>!체</b> )에	
	해당하는가?			
「고지되어	I 이레초도 바다며 - 펜40조에 따르	소이게야 됐거 제하네 대취어 역		510 5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000000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	'에 √ 표시를 합니	l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 소속 기관		연락처 퇴직 전 소속 2	71 7L		
	_ , ,_		되석 신 오축 /	기판		
직무관련자 (퇴직자)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7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	여 이익 또는 불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처 하여 이익 또는 불(	익을 직접적으로  결하려는 것이 명:  기익을 직접적으	받는 개인이나 백한 개인이나 !	법인 또는 단 법인 또는 단체	단체
	일시	사유				
접촉 사항	유형		부담자			
	m명 [ ] 골프 [ ] 여행 [ ] .	'-	.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천	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리	나 위와 같이 퇴직	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	<u>'</u>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	.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접수번호	접수일	, , , , , , , , , , , , , , , , , , ,	처리일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자	<b>7</b>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	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	등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자	
	성명	연락처	직업
법 위반행위자	DISTURBLE FOR	A TILT	
(피신고자)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88(합한현재 또는 개편)	NIII 88	그/II/I
	신고경위 및 이유		
위반행위			
신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변	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	전공단 이사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달하는 곳에 √ 표시를 한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 ] 국민권익위원			심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0 [ ] 동의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이비웨이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	관   피신고자 연락:	<u></u> 처
위반행위 신고사항	신고내용			
		나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	<b>)</b>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관할법원: )	)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J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수사기관 (	)		
		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위법	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del>,</del> . I	기기ᅡ	ᄓᇎᇬᅜᅺᅩᇊᇬᄓᅺᅩ		일 일
소사	기관 한국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재활용품)]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구기이기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u>-</u> 주민등록번호					
			12012					
	신고기관							
		당기관 [ ] 감독기관 [ ]	스시기과 [ ] 가시의					
신고인	[ ] 국민권익위원회		TAND [ ] BAR					
신고인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110-1 02 6102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 [ ] [ ]					
	NE OT EN	VIE 0 1 -110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사항	신고내용							
57.18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종결처리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0 글시니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기	l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다 시원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	[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C	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	관 한국교통안전공	당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72 110	(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이의신청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기관		통보일
통보받은 조치사항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히	 배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	
		<u> </u> 고인(이의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MICOC)	(10 ±0 0)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직위(직급)		연락처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두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기타(	P활동 내역 제출	<ul> <li>[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li> <li>[ ] 가족 채용 제한</li> <li>[ ] 수의계약 체결 제한</li> <li>[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li> <li>[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li> <li>)</li> </ul>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Olal	내추도바지단다고	라 (서명 또는 인)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l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I				
① 요청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② 외부활동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 ] 외국의 기관법인 [ ] 직무와 관련된 [	제10조에 따 !·단체 등을	사른 외부강의 등 대리하는 행위				
	③ 외부활동 주제						
	④ 외부활동 방법						
	⑤ 외부활동 일시			⑥ 일괄신고			
외부활동 내용	20	. ~ 20 .			횟수 : 회 횟수 : 회		
	⑦ 사례금						
	총액 [교통비·숙박비·식비(·		% 1회 평균 대가 천원 별도] (			<sup>넊</sup> 티	천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	9조에 따리		무 관련 외부	활동을 신청합	 }니다.	
		•			년	월	OI.
					닌		일
			신고인			(서명	병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4.10.16.>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 ]에는 해당하	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	급)			
① 외부활동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 ] 외국의 기관법인 [ ] 직무와 관련된 (	제10조에 때 J·단체 등을	다른 외부강의 등 대리하는 행위							
	1									
② 결과	[ ] 허가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	나유 :								
기타 참고사항										
「이해충돌 빙 이 통보합니다	· ·지제도 운영지침」 자 ·	제9조에 따	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	단 이사	장					(서	명 또는	· 인)